

청주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나111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나11194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207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이세호, 이윤선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광덕, 유재환, 박지수

변론 종결 2020. 10. 8.

판결 선고 2020. 12. 3.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207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E 전 25㎡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6. 6. 27. 접수 제120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는 부분

- 제1의 가.항 아래에서 2번째 줄 '이 사건 소장'을 '원고의 2019. 8. 19.자 준비서면'으로 고친다.
- 제3의 나.항 2) 아래에서 3번째 줄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2'를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성기

판사오태환

판사류연중